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 마련 등 〉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032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 마련 등	3

I. 개요

1.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03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왕진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6. 1. 14.
- (3) 회 부 일 : 2026. 1. 15.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에도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보수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도 지역별로 적지 않은 편차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개선방안 제출 등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처우개선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

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복리후생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의 사각지대를 해
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 마련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직무 및 근속기간을 반영하는 임금체계와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마련 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복리후생 수준 및 제공실태,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의 준수를 등에 관하여 3년 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면서,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준수 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에게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제10항 부터 제12항까지).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26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과 신분보장)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 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법률 제2126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과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	개정안
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1. ~ 3. (생략) ④ <u>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제3항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u>	----- -----<u>하며, 경력·직무 및 근속기간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u> ----- ③ ----- ----- ----- -----<u>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이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해당 기준</u>----- -----. 1. ~ 3. (현행과 같음) ④ <u>보건복지부장관</u>----- ----- ---<u>보수·복리후생 수준 및 제공실태,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의 준수율,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u>-----

현행	개정안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 이 경우 보수·복리후생 수준 및 제공실태에는 지역별 수준 및 제공실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신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에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른 조사·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 -----내용, 제10항에 따른 요구 및 이에 따른 제출의 방법과 절차----- -----.
<신설>	⑫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표준 보수·복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사회복지사 등의 <u>보수</u>에 관한 사항 3. (생략) ③·④ (생략)	<u>리후생 기준의 적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보조할 수 있다.</u>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보수</u> 및 <u>복리후생</u>-----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조¹⁾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조²⁾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보수 및 인건비가 적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작성·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직위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승급 및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인건비 외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경력·직무 및 근속시간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설정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게 하려는 것임.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군복무경력 등을 인정하여 호봉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을 개별 시설 유형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여건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호봉제를 미적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별·지자체별 개별 지침에 따라 인건비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일 직종·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상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경력·직무 및 근속기간을 반영한 표준 보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보수 결정 과정의 자의성을 완화하고 보수 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근속시간을 임금체계에 반영하도록 한 점은 단기 인력 수급 중심의 운영 관행에서 벗어나 숙련된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감정노동과 업무 강도가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식 보장이나 직무 스트레스 완화 등 비금전적 보상체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보수에 국한하지 않고 복리후생에 관한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직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복리후생은 시설의 재량에 맡겨질 경우 도입 여부와 수준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므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함

으로써 종사자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시설 간 과도한 차이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도 제고와 인력 이탈 방지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의 이행 주체를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구조와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장에게 사실상의 기준 준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공적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 수준과 복리후생의 범위 역시 예산 편성 결과에 의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준 준수 책임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법률상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를 심화시켜 현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한편,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사회복지법인이나 신규 법인의 경우, 기준 충족을 위한 초기 부담이 커져 사회복지시설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경력·직무 및 근속기간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 적용 범위가 실제 법인 등에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개별 임금체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개별 법인 등의 임금체계를 국가가 직접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 등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한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인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 소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 및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인 법인 등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미준수 시 사유 및 보완계획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업무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개별 법인의 운영을 제약하는 면이 있음.

- (기획예산처) 직무 및 근속기간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보수 기준은 각 사회복지법인이 정할 부분이며 미준수 사유 제출 등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충청북도) 동일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임금체계 마련의 주체를 ‘국가’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기준 설정과 재정 권한을 가진 국가·지자체의 책임은 최소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법인에게 기준 이행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이므로, 현장 혼란·법적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개정 내용에 반대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법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재원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 및 지자체의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공적 책무 이행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7